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(105)

제정 2008. 1.23.

개정 2009. 1. 6.

개정 2009. 9. 7.

개정 2009. 12. 24.

개정 2012. 1.31.

타규정개정 2013. 5. 10<정관>

개정 2014. 1. 27.

개정 2016. 9. 1.

개정 2018. 4. 9.

개정 2022. 5. 25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독학학위운영위원회

제2조(조직)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학학위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독학학위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과정별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에 관한 사항
- 2. 시험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- 3. 응시자격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
- 4. 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사항
- 5.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09.9.7, 2013.5.10, 개정 2016.9.1)
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독학학위취득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부의 독학학위취득업무 관련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학계, 교육행정기관, 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 관련 기관 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(개정 2009.9.7, 2013.5.10, 개정 2016.9.1)
 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(삭제)(개정 2016.9.1)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등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6.9.1)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(신설 2016.9.1)

제7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.(개정 2016.9.1)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- 3. 교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
- 4. 중요 안건 의결을 위해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분과위원회등) ① 위원회 내에 교양분과위원회와 전공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교양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과목별 평가영역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출제원칙 결정에 관한 사항
- 3. 시험과목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교양과목별 평가에 관한 사항
- ③ 전공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전공분야별 시험과목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과목별 평가영역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출제원칙 결정에 관한 사항
- 4. 동일전공 인정에 관한 사항
- 5. 시험과목 면제 결정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전공분야별 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원장은 필요한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어 위원회의 심의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- 제9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진흥원 독학학위취득업무 관련 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.(개정 2009.9.7, 2016.9.1)
- 제10조(회의록) ① 위원회 심의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9.1)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9.1)
- 제11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3 장 학사관리

- 제12조(학적부여) 학적부여는 각 과정별 시험에서 최초로 1과목이상 합격하였거나 면제를 인정받은 자로 한다.
- **제13조(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면허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)** 규칙 제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범위는 [별표1]과 같다.
- 제14조(학위수여 및 포상) ①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서는 [별지] 서식에 의하며, 전공 별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[별표 2]와 같다.
 - ②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**제15조(시험성적의 평정)** 규칙 제6조에 의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 의 총점과 평균점으로 하며, 그 평균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로 한다.
- 제16조(수험료 등) ① 수험료의 징수 방법과 금액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②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에 의한다.
- 제17조(서식 등) 학사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4 장 독학정보상담실

- 제18조(조직)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독학정보상담실을 두고, 시 군 구의 공공도서관에 독학정보안내실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6.9.1)
- 제19조(기능) ① 진흥원의 독학정보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.(개정 2009.9.7, 2016.9.1) 1. 독학정보상담실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
- 2. 시 군 구의 공공도서관의 독학정보안내실의 업무지도 및 지원(개정 2016.9.1)
- 3. 독학학위취득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작 제공
- 4. 독학학위취득에 관한 상담 및 홍보
- 5. (삭제 2009.1.6)
- ② 진흥원의 독학정보상담실과 시 군 구의 공공도서관의 독학정보안내실은 독학학위취득에 관한 상담 및 자료제공의 기능을 가진다.(개정 2016.9.1)

제20조(경비 지원) 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 5 장 기 타

제2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 제22조 삭제 (2022. 5. 25)

부 칙 (2008. 1. 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1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정한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」제12조(학적부여)에 의해 학적이 부여된 자, 제12조의2(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 면허 취 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)에 의해 시험면제를 받은 자, 제13조(학위수여 및 포상)에 의해 학위 수여 및 포상을 받은 자, 제14조(시험성적의 평정)에 의해 시험성적을 평정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 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09. 9. 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12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, 1, 3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> (2013, 5,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개정)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"교육과학기술부"를 "교육부"로 변경한다.

부 칙 (2014, 1,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9. 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제16조 중 "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"을 "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"으로 변경한다.

부 칙 (2018. 4. 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, 5, 2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전공의 학적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)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 에 응시할 수 있다.

[별표 1](개정 2009.9.7, 2009.12.24, 2012.1.31, 2014.1.27., 2018.4.9., 2022.5.25)

각종시험합격자 및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구분(제13조 관련)

각종시험합격자 및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구문(제13소 관련)								
전 공	면제과정	면 제 대 상						
분야		규칙 제4조의2제1항의 시험합격자	규칙 제4조의2제2항의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					
국 어 국문학	전공기초		중등학교준교사(국어) 특수학교교사(국어)					
	전공기초 전공심화							
영 어 영문학	전공기초		중등학교준교사(영어) 특수학교교사(영어)					
	전공기초 전공심화							
경영학	전공기초	○국기(지방)공무원(6 7급): 행정(재경) 세무 운수 통계 감사 ○연구직공무원(연구사): 공업연구(산업경영)	중등학교준교사(상업) 특수학교교사(상업)					
	전공기초 전공심화	○국가(지방)공무원(5급): 행정(재경) 전산 통계 감사 ○연구직공무원(연구관): 공업연구(산업경영) ○국회공무원(5급): 재경	공인회계사					
법학	전공기초	○국가(지방)공무원(6 7급): 교정 보도 보호 검찰 출입국 관리 철도경찰 행정 관세 근로감독 ○외무공무원(6 7급): 외무행정 ○법원공무원(6 7급): 법원사무(법원사무) ○경찰공무원: 간부후보생 ○소방공무원: 소방간부후보생	중등학교준교사(일반사회) 특수학교교사(일반사회) 법무사					
	전공기초 전공심화	아사법시험 변호사시험·군법무관 임용시험 ○국가(지방)공무원(5급): 교정 보도 보호 검찰 출입국관 리 철도경찰 행정 감사 ○외무공무원(5급): 외교 ○국회공무원(5급): 행정 속기 경위 일반행정 법제 재경 ○법원공무원(5급): 법원사무(법원사무) 통역 ○경찰공무원(경정): 일반경찰 해양경찰 ○소방공무원: 소방령 ○군무원(5급): 법무 조사정보						
행정학	전공기초	○국가(지방)공무원(6 7급): 행정 세무 근로감독 운수 전 산 통계 감사 ○국회공무원(6 7급): 행정 속기 경위 ○군무원(7급): 행정	중등학교준교사(일반사회) 투수학교교사(일반사회)					
	전공기초 전공심화	○국가(지방)공무원(5급): 검찰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행정 전산 통계 감사 ○국회공무원(5급): 행정 속기 경위 일반행정 법제 재경 ○군무원(5급): 행정 정훈 편집 교무 심리						

전 공 분 야	면제과정	면 제 대 상	
		규칙 제4조의2제1항의 시험합격자	규칙 제4조의2제2항의 자격 또는 면허취득자
유 아 교육학	전공기초		유치원 준교사
가정학	전공기초	ㅇ지도직공무원(지도사): 생활지도	중등학교준교사(가정) 특수학교교사(가정)
	전공기초 전공심화	ㅇ지도직공무원(지도관): 생활지도	
<u>컴퓨터</u> 공 학	전공기초	o국가(지방)공무원(6·7급): 전산	
	전공기초 전공심화	o 국가(지방)공무원(5급): 전산	
정 보	전공기초	o국가(지방)공무원(6·7급): 방송통신직(전송기술)	
통신학	전공기초 전공심화	o 국가(지방)공무원(5급): 방송통신직(통신기술)	
간호학	전공기초 전공심화	o 국가(지방)공무원(5급): 간호	
중 어중문학	전공기초		중등학교준교사(중국어) 특수학교교사(중국어)
	전공기초 전공심화		
수 학	전공기초		중등학교준교사(수학) 특수학교교사(수학)
	전공기초 전공심화		
상	전공기초	○ 국가(지방)공무원(6 · 7급): 농업(일반농업 · 식물방역) · 임업 (일반임업 · 산림보호) · 축산 ○ 연구직공무원(연구사): 농업연구(농업 · 원예) · 임업연구 · 축산연구 ○지도직공무원(지도사): 농촌지도(농업 · 임업 · 원예 · 축산)	
	전공기초 전공심화	○국기(지방)공무원(5급): 농업(일반농업 · 식물방역) · 임업(일반임업 · 산림보호 · 가공이용) · 축산 ○연구직공무원(연구관): 농업연구(농업 · 원예) · 임업연구 · 축산연구 ○지도직공무원(지도관): 농촌지도(농업 · 임업 · 축산)	

^{※ 2006}년도부터 폐지된 중어중문학, 수학, 농학 전공분야에 대한 시험면제는 폐지 당시 동 전공분야 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

[※] 주 : ()안은 직류임

[별표 2](개정 2014.1.27., 2016.9.1., 2022.5.25)

학 위 종 별

전	공	학 위	종 병		비고	
국 어 국 문	학	문 호	라 시	}		
영 어 영 문	하	문 호	나 시	}		
중 어 중 문	학	문 호	} 시	}		
심 리	학	문 호	라 시	}		
경 영	학	경 영	학 시	}		
법	학	법호	라 시	}		
행 정	학	행 정	학 시	}	중어중문학, 수학, 농학	
유 아 교 육	학	교 육	학 시	}	전공은 2006년도 폐지	
수	학	०) ठॅ	나 시	}		
가 정	학	가 정	학 시	}		
컴 퓨 터 공	<u>학</u>	공 호	나 시	}		
정 보 통 신	학	공 호	나 시	}		
농	학	농 호	나 시	}		
간 호	학	간 호	학 시	}		